

사장님, 달력의 빨간날은 우리도 쉬는날 이래요

공휴일의 유급휴일 적용기준

민간기업에서도 명절, 국경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.
2022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됩니다.



01

도입배경

❖ 달력의 “빨간날”인 관공서 공휴일은 보통 쉬는 날로 알려져 있고, 실제로 관공서와 많은 기업들에서 휴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.
그러나 기존에는 관공서 외 개별 기업의 휴일 여부가 각기 달라, 모두 공평하게 휴식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.



이에 근로자가 명절 연휴 등 공휴일에 차별없이 다같이 쉴 수 있도록 관공서 공휴일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하였습니다.('18.3.20, 근로기준법 개정)

02

공휴일의 유급휴일 적용기준

❖ 민간기업에서도 명절, 국경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.

공휴일	대체공휴일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국경일 중 3·1절, 광복절, 개천절, 한글날 ▶ 1월 1일 ▶ 설·추석 연휴 3일 ▶ 부처님오신날 ▶ 기독교신일 ▶ 어린이날 ▶ 현충일 ▶ 공직선거법 상 선거일 ▶ 기타 수시 지정일(임시공휴일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설·추석 연휴, 어린이날, 국경일 중 3·1절, 광복절, 개천절, 한글날이 토·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다음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정함 (설, 추석연휴는 토요일과 겹치는 경우 제외)

* 민간기업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주 1회 이상의 유급 주휴일을 부여하므로 관공서 공휴일 중 일요일은 민간기업에 적용되는 공휴일에서 제외

03

시행시기 휴일의 증가에 따른 기업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되도록 하였습니다.

- ❖ (2020.1.1.~) 근로자 300인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 및 국가·지자체·공공기관
- ❖ (2021.1.1.~) 근로자 30~300인 미만의 사업 또는 사업장
- ❖ (2022.1.1.~) 근로자 5~30인 미만의 사업 또는 사업장

04

휴일대체

- 공휴일(대체공휴일 포함)을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하지만, 불가피하게 근무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**공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다른 근로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부여(휴일대체)할 수 있습니다.** (법 제55조제2항 단서)

이 경우 ①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해야 하며

②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24시간 전에 고지해야 합니다.

* 근로자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,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

- 휴일대체를 하더라도 연장근로를 포함한 주 52시간 한도는 준수해야 하므로 **휴일대체 근로시간을 포함하여 주 52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가 가능합니다.**

05

휴일수당

- 만약 휴일대체를 하지 않은 채 **근로자가 공휴일(대체공휴일 포함)에 근로를 했다면 휴일근로 가산수당***을 포함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.

* 1일 8시간 이내는 50% 가산, 8시간 초과에 대해서는 100% 가산(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)

- 그러나 휴일대체를 했다면, 원래의 공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,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의 근로가 되므로, **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.**

예) 광복절(8.15.)을 8.17.로 휴일대체 했다면, 광복절이 근로일이 되고 8.17.이 휴일이 됨

*한편, 대체된 휴일에는 근로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, 만약 근로를 했다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.

06

관련 법령

▶ 근로기준법 제55조(휴일)

②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. 다만,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.

▶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(휴일)

②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”이란 「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」 제2조 각호(제1호는 제외한다)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.

▶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(대체공휴일)

- 3·1절, 광복절, 개천절, 한글날 또는 어린이날이 토·일요일과 겹칠 경우
- 설 연휴 또는 추석 연휴가 일요일과 겹칠 경우
- 위 ①②의 공휴일이 토·일요일이 아닌 날에 다른 공휴일(일요일, 임시공휴일 제외)과 겹칠 경우
- 위 ①②③의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 1일 추가 부여
- 이상의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 별도 대체공휴일 부여